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22

발의연월일: 2024. 7. 26.

발 의 자:임호선·이학영·이연희

조 국 · 권칠승 · 안도걸

강준현 · 정준호 · 김병기

박수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·군·구 이외에 도,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·면·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·군·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 및 지원의 대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·면·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·군·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(안 제2조제12호).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2. "인구감소지역"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 (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)·군·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 - 가.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 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 - 나.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·면·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지역. 이 경우 해당 읍·면·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

개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11. (생 략)

12. "인구감소지역"이란 인구감 12. "인구감소지역"이란 인구감 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 되는 시(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「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 정시는 포함한다) • 군 • 구를 대상으로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<u>으로 정하는 지역을</u> 말한다.

정

아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 되는 시(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「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 정시는 포함한다) • 군 • 구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 가.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 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 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

나.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인 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이 우려되는 읍 • 면 • 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지역. 이 경우 해당 읍 • 면 • 동
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3. ~ 18. (생 략)	13. ~ 18. (현행과 같음)